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의 및 처우개선과 신분보장(안 제2조~제3조)

○ 적용대상 및 기관장의 책임(안 제3조~제6조)

○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(안 제7조)

○ 사회복지사의 지원(안 제8조)

○ 사회복지사의 포상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예산부서와 합의 후 예산반영 예정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라. 규제심사: 해당 없음

마. 입법예고: 의견 없음(2016. 8. 25 ~ 2016. 9. 19)

5. 검토내용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~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, 안 제3조는 적용대상으로 성주군 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였으며, 안 제5조는 군수의 책임으로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 제6조～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에 조사,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고, 제9조～제10조는 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경북도 14개 시군에서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, 사회 복지사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